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제15조)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성주군은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성주군수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4. 관련법령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조례제정의 추진배경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환경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화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기본 방향은 차별화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은 각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별도 추가하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시책 및 계획을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세부적이고 개별화 하며, 주민・사업자・행정기관의 책무의 이행으로 지역공간을 친환경으로 하며, 그 속에서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구성과 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4~6조 (군・사업자・군민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제8조~제9조(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3장 녹색성장추진체계로 제10조~제16조까지는 성주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위원의 해촉,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의 근거를 두고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으로 녹색 경제・산업체의 지원과 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시책 및 제 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운동의 추진・교육・홍보 그리고 시행규칙의 근거, 마지막으로 부칙근거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제정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조례의 제정근거와 상위법의 명시,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 수렴 등 입법의 형식과 절차가 타당하고, 입법의 내용과 그 구성이 일반성에 어긋남이 없으며 주민의 저항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적요건과 안정성에는 차질이 없으나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조례 수립대상이 광역자치단체를 기초하였고, 선언적 개념이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여 현실성 있고 사문서화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이 지속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입법상 시행규칙의 제정이 수반되고, 해당 조직의 편성과 예산집행, 위원회 구성에 최선의 선정과 실질적 활동구현 그리고 에너지 절감실천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